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했으나, 향후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를 배상해야 한다. (제28조)

4. 언론중재법 제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의 제정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2005)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정간물법·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을 통합해 피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행의 중재절차를 조정절차로 하고, 중재절차를 새로이 규정

현행 중재절차가 그 실제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에 가까워 법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고유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조정과 중재로 그 절차를 이분화 함으로써 혼란의 여지를 없앴으며 청구인들이 절차에 대한 선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중재대상화를 통한 중재위를 통한 일회적 피해구제 가능

현행은 중재위가 반론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만 중재를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재위가 언론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당사자간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완충장치를 위원회에 둬으로써 언론사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절차를 피하고 비용없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인터넷 매체의 신속성, 무제한적 배포성으로 인해 명예 등 인격권의 침해가 매우 쉽게 그리고 빨리 이루어짐에도 여태껏 인터넷 매체에 대한 법적 장치 미비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피해자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터넷언론의 보도도 지나친 신속성보다는 보도의 신중함에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법원 소제기로 간주

현행 법률은 중재결정에 대해 언론사가 이의신청할 경우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신청인은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언론사의 이의신청 남발을 억제하고,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직권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6) 정정보도청구요건의 완화

반론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어 청구인들의 제도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신청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본질상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정보도청구를 구태여 불법행위로 인한 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입증요건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절차를 따르도록 해 민법 제764조가 인정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예외적 원상회복 조치와도 다른 새로운 권리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조정 및 중재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청구방법을 다양하고 쉽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향후 접수절차의 편리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법적 하자있는 청구남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시정권고는 자체심의를 통해 실정법상 문제가 되는 보도에 한해 이뤄졌으나, 향후 피해자는 물론 제3자도 특정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이들이 시정요구해 올 경우 심의기준의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기준위반여부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언론피해 구제나 언론보도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달리,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주장은 언론자유 일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문재완, 2004; 박용상, 2004; 이신, 2004)

▶언론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하고, 판례로 형성된 언론의 면책범위를 일률적으로 축소하고, 언론피해의 구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윤리적 판단사항들이 법으로 강요되고 있다.

▶공적 책임의 정도가 다른 매체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언론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다.

▶언론중재법으로 언론피해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단일화되는 것도 아니며, 또 단일화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여전히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일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을 판정하기에는 전문지식이 없고 증거조사의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언론중재위 원래의 설립취지, 즉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라는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